

농촌마을 계획기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trategies for Rural Village Reorganization

임승빈* · 박창석**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1990년대 들어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도·농통합, 농어촌정비법의 제정 등의 여러 변화를 통해 공간계획적 측면에서의 농촌계획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이 개발나후지역이 아니라 개발유보지라는 적극적인 개념이 확산되고 있으며, 전원주거지 등의 주거지로서의 개발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내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 기존의 국내외 농촌마을 계획기법을 살펴보고 그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다.

농촌지역의 변화를 공간적인 측면과 거주민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도시와 농촌간에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고 기존의 정주체계(기초마을-중심마을-읍·면사무소 소재 마을-도시)가 상당부분 변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거주민의 측면에서는 도시민의 유입과 겹업 및 분가 등을 통한 혼주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농촌주민의 복지부분에 대한 요구수준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농촌지역의 변화를 농촌마을계획에서 고려하기 위해서는 계획규모 및 계획유형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요구되어진다. 농촌마을에서의 계획규모의 변화는 농촌마을단위의 점적인 농촌마을계획에서 농촌마을군의 면적인 계획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규모의 확대는 농촌마을계획에서의 주거지 개발지의 선정에 음통성을 부여할 수 있고 복지·문화시설과 농업생산관련시설의 배치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 시설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농촌마을군은 농촌마을의 기능 및 성장력, 농촌주민들의 생활권과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인접도시와의 관계와 정주체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농촌마을군의 개발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農村活性化 住居環境整備事業과 聚落地域 整備事業의 사업대상지역이 수개의 취락구역으로 설정되어져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촌마을계획에서의 계획유형은 크게 개발방식(신주거지 개발방식, 농촌마을 재개발, 농촌마을 정비)과 기존농촌마을과의 관계(통합형과 독립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중인 농촌마을관련사업(문화마을 조성사업, 취락구조 개선사업)에서는 농촌지역의 정주체계 및 농촌마을의 공간구조의 변화의 고려가 부족하다. 농촌마을정비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난 점(任外, 1995)에 비추어 농촌마을 정비유형의 개발이 시급하다. 영국에서는 신주거지의 개발방식(통합형과 독립형, 재개발)과 기존농촌마을의 개발방식(확장형, 축소형, 현상유지형)을 구분하고 있으며, 기존농촌마을의 공간구조의 변화에 따른 개발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마을의 경우 기존 농촌마을의 주거환경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므로 이러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적·정책적인 고려가 요구되며,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지유형의 개발이 요구되어진다. 취락구조 개선마을의 경우 기존 마을에 비해 주택 및 상하수도 등에 대한 만족도가 뚜렷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주체계 등과 같은 농촌공간구조의 변화에는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사업규모, 사업대상가구, 사업추진과정 등을 고려할 때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정비법(1995)에 근거한 마을재개발 및 분산마을 정비사업의 경우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농촌마을 관련사업들(주거환경 개선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취락구조 개선사업,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한 역할분담을 명확히 설정하여 농촌계획 및 농촌마을 균계획의 실천적인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농촌지역의 공간구조와 정주체계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마을균개념과 농촌마을관련사업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농촌마을 관련사업들의 체계를 정비하여 일원하시키는 제도적 개편이 요구된다.